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. 6. 30 선고 2021가단240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 고 A종중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6. 30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71. 12. 18. 접수 제207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김재남

별지